

붙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FAQ

<사업 개요>

1. **(전년대비 변경사항)**올해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이 2016년도에 비해 바뀐 부분이 무엇입니까?

➔ 달라진 부분은 신청요강 중 신청 주요사항 요약(iii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 존(2016)	변 경(2017)	비고
지원규모	○ 일반연구: 20백만원 이내/연 ○ 정액연구: 10백만원/연	○ 과제당 지원비: 20백만원 이내/연 ※ 정액연구 유형 폐지	신청요강 3쪽
평가절차 및 방법	계속과제는 컨설팅 기능 위주의 연차점검 실시	계속과제의 연차점검 폐지 (단, 연차보고서 제출)	신청요강 12쪽
연구 계획서 양식		※ 연구계획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제출 시 반드시 변경된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십시오	신청요강 20쪽

*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 **(사업추진일정)**사업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요강 6쪽)

➔ 본 사업은 상반기에만 추진되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연구자 신청 : 2017. 3. 7.(화), 14:00 ~ 3. 14.(화), 18:00까지
- ② 기 관 확 인 : 2017. 3. 7.(화), 14:00 ~ 3. 16.(목), 18:00까지
- ③ 선 정 평 가 : 2017. 3월 ~ 2017. 4월 중
- ④ 선 정 발 표 : 2017. 4월 말
- ⑤ 연 구 개 시 : 2017. 5. 1.

< 신청 및 참여자격 >

3. **(신청자격)**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인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이면(이 중 1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사업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전임강사 경력도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 고등교육법 개정(11. 7. 21.)으로 전임강사의 명칭이 폐지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수로 인정하며, 해당 경력도 함께 인정합니다.

5. (임용기준) 2012. 3. 1. 임용된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2. 3. 15. 이후**에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 국내대학 소속 교원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12. 3. 1.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17. 3. 14.에 임용된 교원도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6. (중복신청 가능여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진연구지원사업과 타 상반기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요강 4쪽)

- 여러 사업의 신청자격을 각각 만족하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사업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선정 사업 :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신진연구자지원, 중견연구자지원, 저술출판지원, 명저번역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지원사업 중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7. (퇴직·휴직기간 관련) 퇴직이나 휴직기간도 재직기간 5년에 포함이 되나요?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5년 이내'의 규정에서 퇴직기간(조교수 직위를 상실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약, 2011. 3월부터 2013. 2월까지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대학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다시 2015. 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2011. 3월~2013. 2월까지 2년 경력과 현재 2년 경력 합산 시 5년 이내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접수시작 전에 **공문으로(신청접수 전 2017. 3. 3.(금)까지 공문송부) 퇴직 기간에 대한 증빙**을 해야만 하며, 미증빙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최초 임용일이 2012. 3. 15. 이전인 분들만 퇴직기간에 대한 증빙 필요합니다.
- 2012. 3. 15. 이후에 임용된 분들은 신청시스템에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휴직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8. (임용대학 기준)전문대학에 재직하다가 금년도에 4년제 대학으로 새로 임용되었을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신청자격이 최초 대학교원의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문대학 임용일자부터 신청마감일까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임용대학 기준)외국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국내 대학으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의 근무경력도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 외국대학의 교수경력은 신청요건의 교원 임용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외국대학에 재직하다가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에는 국내대학 임용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기 수혜자 관련)기 수혜자도 신청 가능합니까?

- 이전에 본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 후 5년이 넘지 않은 연구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여야 합니다.
- 작년(2016년) 1년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기간 종료일이 2017. 12. 31.까지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1.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은 필수인가요? 반드시 현 소속대학의 연구보조원을 넣어야 합니까?

→ 과제 특성상 연구보조원이 불필요한 경우는 연구보조원을 넣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보조원의 소속은 연구책임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나,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 ➔ 연구보조원을 활용할 경우 활용 예정 인원 수를 연구계획서 표지에 있는 '활용 인력'란에 기재해 주시고, 과제 선정 이후 소속 주관연구기관별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연구보조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연구계획서에 연구보조원의 이름, 소속 등 상세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12.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 종전에는 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는 학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각 학위 취득자)에 한해서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박사수료생은 과정생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며, **박사학위취득자와 취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보조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13. (주관연구기관 확인사항)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

- ➔ 아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현재 소속 기관이 최초 임용인 경우에는 정확한 임용일자를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가 아닐 경우에는 연구자의 최초 임용서류(경력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박사학위 취득일자가 10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2017년 연구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신청연구비 내 '전문인건비' 신청 시, 해당 연구책임자가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14. (공동연구 가능여부)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가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신진연구지원사업은 단독연구입니다. 따라서 공동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5. (연구업적 설명)신청요강 4쪽에 따르면 아래의 연구업적 3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2.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①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정여부

⇒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며, 상기 학술지(재단 등재 학술지 등)에 정식 게재된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②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재되기 이전 논문에 대한 등재(후보) 학술지 인정여부

⇒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 이후의 논문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

③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업적 인정여부

⇒ 박사학위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

④ 단독저작 및 공동저작에 따른 연구업적 산정 기준(공동저자 수와 무관)

⇒ (논 문) 단독/공동저작 모두 1편으로 인정

(저역서) 단독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저작의 경우 업적 2편으로 인정

16. (연구업적 설명) 연구업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맞지만 본인이 제1저자가 아니고 공저자인데도 연구업적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 본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연구업적은 최근 5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SCI&SCIE, A&HCI·SS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이라면, 주저자, 공동저자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합니다.(공동저자수와 무관)

17. (연구업적 설명) 연구실적이 3편 이상 필요한데, 논문의 경우 반드시 조교수의 직위일 때 등재된 논문이어야 합니까? (신청요강 4쪽)

→ 아닙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신청마감일인 2017년 3월 14일 사이에 게재 완료된 논문이면 인정됩니다.

18. (연구비 관련) 연구비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구계획서에는 연구비 작성하는 곳이 없는데, 어디에 작성하면 되나요?

- 신청요강 [붙임 1]의 비목별 계상기준(신청요강 18쪽)을 참고하여 신청연구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신청연구비 내역은 온라인 신청 시 기입(아래화면 참조)하시되, 신청 내역을 연구계획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청연구비 온라인 작성 화면>

○ 신청연구비

연구유형 일반연구 총신청년도 3년중 연구비 1 년차

○ 신청연구비 산출내역입력 (단위:천원)

항목		신청금액	산출근거(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한글2000자, 영문 4000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인건비	전문인건비	0	
	연구보조원수당	0	
	소계	0	
직접비	장비 재료비	0	
	학술연구비	0	
	학술활동수당	0	
소계		0	
합계		0	

[저장]

- 간접비는 연구비 신청 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연구비 예시는 별도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19. (연구비 관련) 소속 기관(대학 등)에서 별도의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입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나요?(신청요강 18쪽)

- 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지 않는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비용항목별 계상기준)에 의해 전문 인건비를 월 17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단, 전문인건비를 편성하는 경우 학술활동수당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20. (연구비 관련) 동 사업의 신청요강에 의하면 선정과제당 간접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신청 시 간접비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요?(신청요강 18쪽)

- 간접비는 신청연구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간접비는 신청과제가 선정되면 소속 기관의 협약시점 고시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소속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21. (신청 기타)**임용된 지 5년차가 되는 연구자입니다. 올해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에 3년과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가 5년차인 연구자이더라도 다년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3년 연구까지 가능)
- 22. (신청 기타)**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의 연구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 2016년에 재단 '우수논문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해당되나요? (신청 요강 10쪽)
- 재단의'우수논문지원사업'은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와는 다른 사항으로,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인'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과제'란, 재단 및 교육부에서 매년 산출된 학술지원사업 성과 중 우수한 성과를 선발하여 시상한 과제입니다.
 - ※ 본 사업 신청 시 '14~'16년 교육부 및 재단 우수성과 과제의 대표자 1인에게는 가산점(3점) 부여(우수성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1회)
 - 가산점 활용을 원할 시, 신청마감일 이후 **15일 이내** 재단으로 가산점 사용여부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

- 23. (연구계획서)**연구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단, 연구계획서 내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탭에서 '동의'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미동의 시 과제 신청 불가)

25. (IRB심의 관련) IRB심의를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신청요강 15쪽)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과제 신청 시 IRB 심의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

(단,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문의 www.nibp.kr)